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43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강대식 · 나경원 · 서천호  
조배숙 · 김선교 · 강선영  
강명구 · 구자근 · 최은석  
김용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진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마저 위축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 비록 본 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

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의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21. 2. 25. 2017헌마1113).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과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수사권 발동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려는 것임(안 제307조 및 제312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7조 및 제3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7조제1항, 제308조, 제309조제1항 및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제2항 및 제309조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07條(名譽毀損) ①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2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p> <p>②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5年 以下の 懲役, 10年 以下の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p>	<p>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生活에 관한 重大한  비밀을  침해하는 事實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공연히  허위의 事實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第312條(告訴와 被害者의 意思)</p> <p>① 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p>	<p>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p> <p>① 제307조제1항, 제308조, 제309조제1항 및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제307조제2항 및 제309조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